

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

[최상국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192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2. 26.

발의의원 : 최상국 의원, 하중환 의원

1. 제안이유

- 군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책무, 추진계획 수립, 사업 및 지원(안 제3~제5조)
- 다. 위원회설치 및 기능, 우수 콘텐츠의 활용, 보조금 준용
(안 제6조 ~ 제8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

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“마을공동체미디어”란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, 음성, 인쇄, 신문, 방송 등의 매체를 말한다.
- 2.“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”이란 마을공동체미디어 제작 및 운영, 발표, 비영리 목적의 유통 및 보급, 이들을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에 힘쓰는 것을 말한다.
- 3.“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”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, 비영리법인 등의 조직체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,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활성화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확산·보급에 노력해야 한다.

③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.

④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지방자치단체, 사회단체, 언론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
2. 예산지원 규모, 협력방안
3.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사업 및 지원)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
2.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, 홍보, 연구,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
3.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·기관의 지원 사업

②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군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, 실습, 매체 제작, 발표 등의 활동
2.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
3.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
4. 그 밖에 군수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
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
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가 대
신한다.

제7조(우수콘텐츠의 활용) 군수는 마을공동체가 생산하는 마을공동체
미디어 관련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
있다.

제8조(보조금 준용)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중
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
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